



[2016.2.12.] [26980 , 2016.2.12.,]

() 02 - 2110 - 2929

1 () 「 」 .
< 2010.2.4.>

2 () 「 」 (" ") 4 3
가 가 . . ,
가 가 2 . <
2008.2.29., 2010.2.4., 2013.3.23., 2014.6.30., 2015.3.30.>

1. : (" ")
12
가. . 가
. . 2
. 「 」 52

2. : 50
3. :
가. 가
. .
. 가
. 가
4. 3 가
5. 2 3
1 3 4
. < 2008.2.29., 2013.3.23.>

[2002.6.10.]
2 2() 4 3 1
「 」 30 1 2
3 (" ")
. < 2016.2.12.>
2 3

. 가
[2014.6.30.]

3 () 4 ()
 . < 2004.3.17., 2006.6.12., 2008.2.29., 2010.2.4., 2013.3.23. >

1.
 2.
 3. 2 1 . .

4.
 1 .
 2 2 . < 2008.2.29., 2013.3.23.,
 2014.6.30. >

1. 2 1 . .
 2. 5
 2 . < 2008.2.29., 2013.3.23. >
 1 . < 2008.2.29., 2013.3.23. >
 가
 . < 2008.2.29., 2013.3.23. >

. < 2008.2.29., 2013.3.23. >
 1 「 」 36 1
 . < 2006.6.12., 2008.7.17., 2010.2.4., 2010.5.4.,
 2013.3.23. >

1. <2010.2.4. >
 2. <2010.2.4. >
 [2002.6.10.]

3 2() 3 . < 2008.7.17. >
 [2002.6.10.]

3 3() 가 30
 () ()
 . < 2004.3.17., 2006.6.12., 2008.2.29., 2013.3.23. >

1. 3 1 2
 2.

60

1
 . < 2012.6.29., 2013.3.23. >
 1
 < 2008.2.29., 2012.6.29., 2013.3.23. >

1. 6
 2. 19 2

3.

3

.<

[2008.2.29., 2012.6.29., 2013.3.23.>](#)

.< [2008.2.29., 2012.6.29., 2013.3.23.>](#)

3 7 1

.< [2006.6.12.,](#)

[2012.6.29.>](#)

[[2002.6.10.](#)]

3 4(

)

12 1

< [2008.2.29., 2013.3.23.>](#)

[[2002.6.10.](#)]

4 ()

가

.< [2002.6.10.>](#)

4 2(

)

13 2

1

.< [2011.4.5.>](#)

1

2

1

가

가

2

.<

[2008.2.29., 2013.3.23.>](#)

1 2

[2008.2.29., 2013.3.23.>](#)

[[2006.6.29.](#)]

.<

4 3(

)

5

가

「

」

19 1

가

[[2014.8.6.](#)]

[4 3 4 4 <[2014.8.6.>](#)]

4 4(

)

2

2014 1 1

3

(

3

1

1

)

.< [2014.12.9.>](#)

2

(

2

.< [2014.12.9.>](#)

1. 3

: 2015 1 1

2. 3 2

: 2015 1 1

3. 3 3

: 2015 1 1

[[2013.12.30.](#)]

[4 3 <[2014.8.6.>](#)]

4 5

<[2010.2.4.](#)>

4 6 <2010.2.4.>

4 7 <2010.2.4.>

5 () 34 1 2 .
[2011.4.5.]

6 <2008.7.17.>

< 16457 ,1999.6.30.>

1999 7 1 .

< 17625 ,2002.6.10.>

() .

() .
7 1 1 " 2 2 (" ")" "
2 3 (" ")" , 7 2 · 9
44 1 4 " " " , 57 1 2 " 2 2
" " 2 3 " .

< 18312 ,2004.3.17.>

< 19507 ,2006.6.12.>

< 19570 ,2006.6.29.>

2006 7 1 .

< 20741 ,2008.2.29.>

1 () . < >

2 5

6 () <62>

<63>

2 1 1 가 · · 2 , 3 1 · 2 · 3 6
, 3 3 1 · 2 · 3 · 4 , 3 4, 4 2 2 , 4

3 2 · 2 1 · 3 · 3 6 · 4 , 4 4 3 6
 1 · 2 · 3 " " " " .
 3 6 , 3 3 4 , 3 4, 4 2 3 6 4 " " "
 " .
 4 3 2 1 4 4 3 " " " " .
 4 3 2 2 5 .
 <64> <105>

< 20917 ,2008.7.17.>

- 1 () .
- 2 () 3 2 .

< 22016 ,2010.2.4.>

- 1 () .
- 2 () .
- 20 3 90 .
- 90. .

< 22151 ,2010.5.4.>

- 1 () 2010 5 5 .
- 2 3 .
- 4 () <145>
- <146> .
- 3 7 " 「 」 21 1 " 「 」 36 1 " .
- <147> <192>

< 22846 ,2011.4.5.>

- 1 () .
- 2 () 2

< 23898 ,2012.6.29.>

< 24425 ,2013.3.23.>

1 () . , 6

2 5

6 () <81>

<82>

2 1 1 가 . , 2 , 3 1 , 2 , 3
7 , 3 3 1 , 2 , 3 , 4 .
5 , 3 4 4 2 2 " " " " .
3 6 , 3 3 5 , 3 4 4 2 3 " " " "

2 2 1) · 2) 1) · 2) " " "

<83> <129>

< 25050 ,2013.12.30.>

2014 1 1 . < >

< 25406 ,2014.6.30.>

< 25532 ,2014.8.6.>

2014 8 7 .

< 25840 ,2014.12.9.>

1 () 2015 1 1 .

2 16

< 26166 ,2015.3.30.>

< 26980 ,2016.2.12.>

1 ()

2 3

4 ()

2 2 1 " 「 」 19 1 " " 「 」 30 1 " 」

5

[별표 1] <개정 2011.4.5>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제4조의2관련)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 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4호	1천만원
2.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5호	
가. 법 제11조제4호·제5호의2·제6호 내지 제9호·제11호의2·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나. 법 제11조제2호·제3호·제5호·제9호의2·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

[별표 2]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 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50	500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7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부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역부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나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200 100	350 200	500 300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의무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고한 경우 2) 신고 의무일부터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고한 경우 3) 신고 의무일부터 2개월이 초과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200 300 400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인증업무의 휴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300	400 500	500
마.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5호		500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	법 제34조제1항제	100	250	500

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호			
사.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7호	100	250	500
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7호의2	100	250	500
자.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등을 공인인증서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표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8호	100	250	500
차. 법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9호	100	250	500
카.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0호	100	250	500